



일본의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II)

지난 특정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I)에서는 제1장 총칙(제1~2조), 제2장 기본방침 등(제3~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번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II)에서는 제3장 소매업자의 수집 및 운반(제9~16조), 제4장 제조업자 등의 재상품화 등의 실시(제17~31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스스로가 과거에 소매 판매를 한 특정 가정용 기기와 관련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가 요구되었을 때
2. 특정 가정용 기기의 소매 판매에 즈음해, 동종의 특정 가정용 기기와 관련되는 특정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가 요구되었을 때

I. 제3장 소매업자의 수집 및 운반

1. 인수의무

(제9조)
 소매업자는, 다음에 기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고 함)로부터 해당 배출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장소에 있어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소매업자에 대해 과거에 자신이 소매 판매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되었다는 것과 신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것과 교환에 의하여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동종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매업자에게 수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매업자가 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재상품화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개의 소매업자에 대해 그 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는 기계 기구(예를 들면, 다른 소매업자가 판매한 것)를 모두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소매업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제1호 및 제2호를 규정함으로써 개개의 소매업자에 대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인도 의무

(제10조)

소매업자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했을 때는, 스스로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특정 가정용 기기로서 재차 이용하는 경우 그 외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해야 할 제조업자 등(해당 제조업자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해당 제조업자 등을 확지할 수가 없을 때는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법인)에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소매업자에 대하여, 일단 인수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가정용 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지정 법인에 인도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재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로서는 ① 소매업자 스스로가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특정 가정용 기기로서 사용한 경우, ② 소매업자가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특정 가정용 기기로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③ 소매업자가 리사이클숍과 같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특정 가정용 기기로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서 하고 있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²⁾

3. 요금의 청구

(1) 제11조

(제11조)

소매업자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가 요구되었을 때는 전조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는 제조업자 등 또는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 법인에 해당 특정 가

- 1) 인수는 현재의 이른바 교체시의 '인수 관행'을 고려하여 소·도매업자가 수집의 의무를 담당해야 할 특정 가정용 기기의 범위를 '과거에 스스로 소매판매 한 것'과 '새로운 소매 판매에 즈음해 인수가 요구된, 새롭게 소매 판매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 2)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도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경우)란 ① 스스로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특정 가정용 기기로서 재차 사용하는 경우, ②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특정 가정용 기기로서 재차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는 수집 및 운반에 관련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소매업자가 특정 가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요금을 배출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조에서 '전조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매업자가 인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재이용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업자에게 인정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 취급은, 재이용에 사용하는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지정 법인에 인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지정 법인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에서의 '요금'이란 어디까지나 소매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지정 인수 장소까지의 수집·운반에 관한 것이며, 이 범위 내에서 요금을 정하게 된다. 이 요금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실시하는 재상품화 등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제12조

(제12조)

소매업자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가 요구되었을 때는 제10조의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도해야 할 자가,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와 관련하여 그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에 관계되어 청구하는 요금(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해야 할 제조업자 등에 있어서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요금,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 법인에 있어서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제33조 제2호에 기재된 업무에 관한 요금)을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는 제조업자 등 또는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 법인이 해당 소매업자의 인수에 앞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요금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제33조 제2호에 기재된 업무에 관한 요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로써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제한이 없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소매업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에 해당되어,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지정 법인이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와 관련되는 요금으로 사전에 설정한 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요금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지정 법인에게 양도되어야 할 것으로, 예를 들면, 소매업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인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단지 동 법률에 기초를 두는 명령·벌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한 채무 불이행,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부당 이득 등에 근거하는 반환 청구권이 배출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되고, 소매업자는 해당 요금을 배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요금,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 법인에 있어서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제33조 제2호에 기재된 업무에 관한 요금'이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지정 법인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할 때에 청구 하게 되는 요금에 대하여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받기 전에, 배출자로부터 직접 요금을 사전 입금 등에 의해 수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³⁾

4. 요금의 공표 등(제13조)

(제13조)

① 소매업자는, 주무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서 정한 요금에 대하여, 사

전에 공표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되는 요금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능률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적절한 원가⁴⁾를 감안해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소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되는 요금 설정에 있어 배출자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적절한 배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④ 소매업자는 특정 가정용 기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특정 가정용 기기를 구입하는 자가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함에 의하여,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와 관련되는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 내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요금에 대해, 이러한 자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소매업자가 청구하는 요금의 적정화를 꾀하기 위해, 소매업자가 배출자에

- 3)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 법시행 규칙 제4조(소매업자가 요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의하면, 제12조에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제조업자 등 또는 지정 법인이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요금 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는 동법 제33조 제2호에 기재된 업무에 관한 요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배출자가 제시하는 경우로 한다.
- 4)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수집 운반에 관한 요금으로 공표되는 액의 설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원가'를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매업자가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집·운반 요금의 청구를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가장 능률적으로 행하는 경우의 '적정한 원가'를 목표로 해 비용절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적정한 원가'는 개개의 소매업자가 자기의 개별 사정 등도 판단에 고려하여 능률적으로 행하였을 경우의 원가를 의미한다.

게 청구하는 요금의 설정·공표⁵⁾와 관련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다양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관한 요금까지, 소매업자가 모두 공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로부터 개별의 조회에 대응하여 소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이 요금을 응답하도록 정하고 있다.

5. 요금에 대한 권고 등(제14조)

(제14조)

- ① 주무 대신은 소매업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한 요금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능률적으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한 원가를 현저하게 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소매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그 공표한 요금을 변경하도록 하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② 주무 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소매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소매업자에 대해 그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 조문의 입법 취지는 소매업자가 수집·운반에 관한 요금으로 해서 공표한 액이 적정한 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주무 대신이 권고 또는 명령에 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정함이다. 여기에서 '적정한 원가'란 권고 대상이 되어야 할 소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에 있어서 다른 소매업자가 공표한 요금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정당한 이유'란 해당 소매업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1항의 권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권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해당 소매업자가 설정하는 요금을 시정하지 않으면 배출자의 적정한 배출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명령(命命)이라는 강제력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을 한 것이다.

6. 지도 및 조언

(제15조)

주무 대신은 소매업자에 대하여 제9조에 규정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 또는 제10조에 규정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도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

*** -----

5)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법 시행규칙」 제5조(소매업자의 요금의 공표의 방법)에 의하면,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소매업자의 점포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그 이외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수 또는 인도의 실시와 관계되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가 있다.

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소매업자에 대하여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주무 대신이 소매업자에 대해, 제9조 및 제10조로 규정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수집·운반(인수 및 인도)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도 및 조언'은 소매업자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인도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주무 대신에 의해 소매업자 일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무 관청의 직원 등이 개개의 소매업자나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의 개최, 팜플렛류의 배포, 현지에서의 지도 등을 실시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15조에 규정하는 지도 및 조언에 의하여서도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 및 인도를 하지 않는 소매업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로 권고, 명령을 할 수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는 제2항에서의 '정당한 이유'와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제9조의 '정당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해 인수를 할 수 없을 때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건의 인수를 요구한 자가, 소매업자의 청구하는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권고에 비해 보다 강제적인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반한 경우 벌칙도 부과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소매업자에게 고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제2항의 '정당한 이유'에는 그러한 사정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7. 권고 및 명령

(제16조)

- ① 주무 대신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전 조에서 정한 인수 또는 인도를 하지 않는 소매업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매업자에 대해 해당 인수 또는 인도를 해야 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② 주무 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권고를 받은 소매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

II. 제4장 제조업자 등의 재상품화 등의 실시

1. 인수의무

(제17조)

제조업자 등은 스스로가 제조 등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그 자가 다른 제조업자 등에 대해 상속, 합병 또는 분할(그 제조 등의 사업을 승계시키는 것에 한정)이 있었을 경우에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내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혹은 분할에 의해 그 제조 등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 또는 다른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그 제조 등의 사업을 양수한 자일 때에는 피상속인, 합병에 의해 소멸한 법인 또는 분할을 한 법인 또는 그 제조 등의 사업을 양도한 제조업자 등이 제조 등을 한 것을 포함한다. 제29조 제1항에 있어서도 동일)와 관련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가 요구되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는 장소로서 사전에 해당 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장소(이하 '지정 인수 장소'라고 한다.)에 두어, 그 인수를 요구한 자로부터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스스로가 제조 또는 수입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의 지정 인수 장소에 있어서의 인수를 의무로 하고 있다.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들면, ① 기업 합병이 있었을 경우에 합병에 의해 신설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해 법인이 제조 등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을 인수하는 경우,

② 기업 합병이 있었을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법인이 제조 등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을 인수하는 경우, ③ 자연인인 제조업자 등의 상속인이 사망한 제조업자 등이 제조 등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을 인수하는 경우, ④ 특정 가정용 기기의 제조 등의 사업을 양도한 사람이(분할에 의해 양도한 경우 포함) 사업을 양도한 제조업자 등의 제조 등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을 인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해, 지정 인수 장소나 재상품화 등을 위한 시설이 조업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나, 재상품화 등을 할 수가 없을 때 혹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를 요구한 사람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청구하는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때를 가리킨다. 덧붙여, 제9조에서는, 소매업자가 '배출자로부터'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제17조에서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해야 할 상대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스스로가 제조 또는 수입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에 대하여 인수 요청을 한 자가 누구라 하더라도 그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직접, 배출한 자이나 시정촌(市町村)으로부터 인수의 요청이 있던 것이라도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재상품 등 실시 의무

(제18조)

- ① 제조업자 등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등은 전항에 규정하는 재상품화 등을 할 때는, 정령으로 정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마다 생활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이며, 당해 재상품화 등의 실시와 일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인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과 관련되는 재상품화 등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그 재상품화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생활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사항을 재상품화 등과 아울러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제10조에 있어서 인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 등과의 관계로, 중고품을 재출하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상정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일단 인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반드시 재상품화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이용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서 제1항

의 ‘지체없이’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을 인수했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 없이 재상품화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정 인수 장소로부터의 운반의 상황이나 재상품화 등을 실시하는 시설의 상황 등에 의해, 일시적인 보관을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또한 제2항의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란 재상품화 등이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해체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 해체 작업을 실시할 때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을 회수·처리함으로써 생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고, 재상품화 등을 하기 위한 해체 작업의 공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전 제거 등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아 효율적이라고 특별히 인정되는 행위를 ‘일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냉장고나 에어컨에 포함되는 냉매용 가스(① CFC 및 HCFC(CFC 및 HCFC는, 이른바 「프레온」), ② HFC(이른바 「대체 플론」, 지구 온난화 물질))의 회수·분해가 이것에 포함된다.

3. 요금의 청구

(제19조)

제조업자 등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가 요구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를 요구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에 관련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 등이 그 인수에 앞서 해당 요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특정 가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요금을 인수를 요구한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해체 선별, 파쇄 등의 재상품화 등과 관련되는 직접 행위 및 그 운반, 잔유물의 처리 외에 동법 제18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및 재상품화 등을 위해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행할 필요가 있는 행위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무비용 등이 포함된다.

4.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

- ① 제조업자 등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에서 정한 요금에 대하여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되는 요금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능률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원가를 상회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제조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되는 요금의 설정에 있어서 배출자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 등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를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요금 이외의 금액을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요금으로 해서 청구해서는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청구하는 요금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를 요구한 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의 설정·공표와 관련하여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할 때 청구하게 되는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요금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 의한 구입 제품의 선택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⁶⁾ 여기에서 제2항의 '적정한 원가'란 제1항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요금으로 해서

6)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 범시행 규칙」 제8조(제조업자등의 요금의 공표의 방법)에 의하면, 동법 제2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표되는 액의 설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원가를 상회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2항에 있어서 적정한 원가를 감안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의하여, 적정한 원가를 상회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매업자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의 사이에 차위(差違)가 설정되어 있다.

5. 요금에 대한 권고 등

(제21조)

- ① 주무 대신은, 제조업자 등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한 요금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능률적으로 행한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원가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을 때 또는 제조업자 등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에 즈음해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한 요금 이외의 액을 청구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 등에 대해, 기한을 정해, 그 공표한 요금을 변경하도록 하는 취지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주무 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제조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제조업자 등에 대해 그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요금으로 공표한 액을 시정하기 위한 주무 대신이 내린 권고·명령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1항의 '적정한 원가'란 권고의 요건이며, 권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가정용 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다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표한 요금, 실제의 재상품화 등의 실시와 관련되는 비용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제2항의 '정당한 이유'란 해당 소매업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6. 재상품화 등의 기준

(제22조)

- ① 제조업자 등은, 인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에 대해, 매년도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재상품화 등을 실시해야 할 양(量)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 재상품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등은 전항에 규정하는 재상품화 등을 했을 때는 그 상황에 있어서 공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실시하는 재상품화 등에 대하여 그 최저한도를 달성해야 할 양에 관한 기준을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국민 각층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

자 및 수입업자가 재상품화 등의 상황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표하는 듯 노력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⁷⁾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행하여야 재상품화 등의 양에 대해서는 개개의 제조업자 등이 인수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양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절대적인 양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율로 규정하게 된다. 또한 그 비율을 계산할 때의 분모는 '인수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양'이 되지만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한 계측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매년도'로 하여 연도를 하나의 단락으로 그 양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7. 재상품화 등의 인정

(제23조)

① 제조업자 등은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

의 재상품화 등을 하려고 할 때(다른 자에게 위탁해 재상품화 등을 하려고 할 때를 포함)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된 어떤 것에 적합한 것인가에 관련하여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제33조 제1호에 규정한 특정 제조업자 등이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 법인에 위탁해 재상품화 등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제한은 없다.

1. 해당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자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전호에 규정하는 자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② 전항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주무 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서 기재한 사

*** -----

7)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 법시행령」 제4조(재상품화등의 기준)에 의하면, 제22조제 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재상품화 등을 실시해야 할 양에 관한 기준은, 당해년도에 있어 재상품화 등을 한 다음의 표 상단에 기재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에 대해,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로부터 분리된 부품 및 재료 중 재상품화 등이 이루어진 것의 총중량의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총중량에 대한 비율이 각각 동표의 중란(中欄)에 기재한 비율 이상으로 하는 한편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로부터 분리된 부품 및 재료 중에서 재상품화등이 이루어진 것의 총중량의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총중량에 대한 비율이 각각 동표 하란(下欄)에 기재하는 비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상란의 1호~4호는 각각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가리킨다. 중란은 재상품화 등(매테리얼 리사이클 및 서멀 리사이클)을 한 비율(중량비)을 나타내고, 하란은 재상품화(매테리얼 리사이클)를 한 비율(중량비)을 나타낸다. 위 표에서는 중란과 하란의 2개 비율은 동일하다. 이는 제조업자 등이 재상품화 등을 하려면, 매테리얼 리사이클만으로 재상품화 등을 실시해야 할 양에 관한 기준을 달성해야 함으로 의미한다.

상 란	중 란	하 란
1. 제1조 제1호에서 기재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	60/100	60/100
2. 제1조 제2호에서 기재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	50/100	50/100
3. 제1조 제3호에서 기재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	50/100	50/100
4. 제1조 제4호에서 기재된 특정 가정용 기기가 폐기물이 된 것	50/100	50/100



항을 기재한 신청서 기타 주무 성령에서 정한 서류를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실시하는 자 및 해당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 ③ 주무 대신은, 제1항의 인정의 신청과 관련된되는 재상품화 등이 동항 각 호의 어떤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재상품화 등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이 없는가 및 해당 제조업자 등이 충분한 재상품화 등의 능력을 보관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주무 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제조업자 등이 실시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은 폐기물의 처리의 하나의 유형이며, 해당 행위가 생활 환경의 보전상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재상품화 등을 꾀하는데 있어서 사후적으로 달성의 정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의 제조 또는 수입한 물건의 재상품화 등에 관한 능력을 충분히 보관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 또는 지정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을 하여 제품화

등을 하려면 생활 환경의 보전상 지장이 없는 형태로 의무를 지울 수 있었던 재상품화 등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는 취지의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인정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인정의 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8. 변경의 인정

(제24조)

- ①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등은 동조 제2항 제2호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주무 성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 제외)을 할 때는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의 인정에 대해 준용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23조의 재상품화 등의 인정에 관한 변경에 대해 정한 것이다. 제1항에서는 스스로 또는 지정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의한 재상품화 등의 인정에 대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신청 때의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주무 대신의 인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전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9. 인정의 취소

(제25조)

주무 대신은 제23조 제1항의 인정과 관련되는 재상품화 등이 동항 각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23조의 재상품화 등의 인정을 받아 스스로 또는 지정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을 실시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인정을, 제23조 제1항의 인정의 요건 중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덧붙여, 한 번 인정의 취소를 받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다시 인정의 접수를 할 경우에는 재차 제23조 제2항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무 대신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표시

(제26조)

제조업자 등은, 특정 가정용 기기를 판매할 때에는 주무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에 해당 특정 가정용 기기의 제조 등을 한 자로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각 특정 가정용 기기에 대하여 그것이 폐기물이 된 것의 재상품화 등을 할

의무가 있는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특정 가정용 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 스스로가 제조 또는 수입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그 특정 가정용 기기에 첨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덧붙여 본 조가 시행 전에 출하 등이 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지도 및 조언

(제27조)

주무 대신은 제조업자 등에 대해 제17조가 규정하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 또는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수 또는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실시에 관계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주무 대신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제17조 및 제18조로 규정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 및 재상품화 등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 및 조언을 할 수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도 및 조언'은 제28조에 근거하는 권고·명령과는 달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주무 대신에 의해 제조업자 등 일반적으로 대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무 관청의 직원 등이 개개의 제조업자 등이나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의 개최, 팜플렛류의 배포, 현지에서의 지도 등을 상정하고 있다.

12. 권고 및 명령

(제28조)

- ① 주무 대신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전조에 규정하는 인수 또는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제조업자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해당 인수 또는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② 주무 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제조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제조업자 등에 대해 그 권고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제27조에 규정하는 지도 및 조언에 따라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 및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제조업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인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동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제9조의 '정당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해 인수를 위한 지정된 인수 장소나 재상품화 등을 위한 시설이 파손하고 있는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인수 행위를 할 수가 없을 때,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인수를 요구한 자가 제조업자 등이 청구하는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때를 의미한다. 한편, 권고에 비해 보다 강제적인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한 경우 벌칙도 부과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고유의 특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제2항의 '정당한 이유'에는 이러한 사정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 지정 인수 장소의 배치 등

(제29조)

- ① 제조업자 등은 지정 인수 장소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리적 조건, 교통 사정, 스스로 제조 등을 한 특정 가정용 기기의 판매 상황 그 외의 조건을 감안해,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재상품화 등에 필요한 행위의 능률적인 실시 및 소매업자,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 법인 또는 시정촌(市町村)에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해당 제조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인도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 등은 지정 인수 장소를 지정했을 때는 해당 지정 인수 장소의 위치에 대해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소매업자 등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특정 가정용 기기 폐기물의 원활한 인도를 위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지정 인수 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⁸⁾

청), 제31조(지정 인수 장소와 관련되는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14. 기타

기타 제30조(시정촌(市町村)의 장애 의한 신

고 재 종
(선문대 법대 교수)

*** -----

8) 「특정 가정용 기기재상품화 법시행 규칙」 제16조(지정 인수 장소의 공표의 방법)에 의하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해당 지정 인수 장소의 소재지 및 해당 지정 인수 장소를 관리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시사(時事)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